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19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1998년 9월 14일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1998년 9월 14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9월 19일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중 운)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져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 (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함 (안 제5조)
-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9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 할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임의대로 예탁관리 할 수 있는 것을 충청북도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3조)

둘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셋째, 기금의 관리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고, (안 제5조)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9조)

다섯째,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1998. 9. 11자로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계장의 명칭이 담당으로 변경되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상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①안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 제5항중 자연재해업무담당계장을 자연재해업무담당으로 계장을 삭제함. (안 제6조, 7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가.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나.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 대비표